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취지에 맞게,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 품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부담금 품목 중 “껌”을 제외함(안 제10조)

나.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에서 껌 품목을 삭제함(안 별표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대통령령 제 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2의 표 제3호와,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) ① 법 제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품·재료· 용기”란 다음 각 호의 제품·재 료·용기를 말한다.	제10조(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) ① (현행과 같 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껌	<삭 제>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81